전세임대 도배/장판 지원 절차

1	입주자	**도배장판 시공요청서 제출**	■ 전세임대 계약시 법무법인에 제출 ■ 법무법인은 도배장판 희망입주자에게 도배장판 안내문 배부
2	입주자	**시공업체 선정**	■ 공사비 청구 증빙서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함 「공사비 청구 증빙서류 : 시공업체 서류」 – 사업자등록증사본 – 통장사본 –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
3	입주자	**시공업체 선정 후 (법)서린으로 사전승인 요청**	■ 「공사비 청구 증빙서류」제출이 가능한 업체를 탐색하여 **시공 전**에 **업체의 상호명과 연락처**를 법무법인에 통보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**- 법무법인 승인없이 임의시공시 공사비 지원 불가함** **- 시공업체의 「공사비 청구 증빙서류」 미비시 공사비 지원 불가함**
4	입주자 / 시공업체	**협의 후 시공진행**	■ 시공결과에 분쟁이 없도록 시공 전 업체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
5	시공업체	**시공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지급 요청**	■ 공사비 청구 증빙서류를 법무법인 서린으로 제출 - 시공업체 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,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- 제출양식 서류 :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및 대금지급요청서, 공사 전·후 사진
6	LH공사	**공사비 청구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**	■ 시공업체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증빙서류 이상 없을 시 시공업체 계좌로 입금 (컬러 프린트 작성양식 제출시 약 2~3주 / 인화사진 제출시 약 4~5주 소요)

법무법인 서린 TEL) 02-3394-6348 / M.P.)010-6687-6570

서린(LH서울 전세임대) / FAX) 02-6280-7700 / seorinlaw55@gmail.com